

##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10% 이상 증가한”을 “100분의 10 이상 증가한”으로, “10% 이상에”를 “100분의 10 이상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최근”을 “직전”으로, “금액의 110%를 초과하는”을 “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”으로, “초과분의 10%”를 “증가분의 100분의 50”으로 한다.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 중 “설치하여”를 “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
③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 이자액 등)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

야 한다.

1.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
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 내용
3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사항 등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<u>10% 이상 증가한</u> 경우, 그 초과분의 <u>10% 이상에</u> 해당하는 금액</p> <p>2.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<u>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%를 초과하는</u> 경우, 그 <u>초과분의 10% 이상에</u> 해당하는 금액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 ①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<u>설치하여</u>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위원회의 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</p>	<p>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 <u>100분의 10 이상 증가한</u> - ----- <u>100분의 10 이상에</u> -----</p> <p>2. ----- ----- <u>직전</u> ----- <u>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</u> ---<u>증가분의 100분의 50</u>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 ----- ----- ----- <u>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</u> ----.</p> <p>제7조(위원회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

을 심의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5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③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 이자액 등)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

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 내용

3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 사항 등